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-11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체육시설 이용자가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9조(개인사용료 납부 및 반환)

- 제2항제2호가목 중 “100분의 10을 공제 후”를 “전액”으로 한다

나. 조례 [별표3]

- 전용사용료의 범위 중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기준 구체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0. 11. ~ 2018. 10. 31. (의견제출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권고사항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8. 11. 8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- 6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

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100분의 10을 공제 후”를 “전액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전용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명칭	구분	사용료		비고
		체육경기	일반행사	
염리생활 체육관	종합	55,000	8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
	체육관	~ 100,000	~ 160,000	
	다목적	15,000	30,000	
	체육실	~ 40,000	~ 60,000	
마포구민 체육센터	종합	100,000	20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농구코트 1면당
	체육관	~ 200,000	~ 400,000	
	다목적	30,000	6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
	소체육관(大)	~ 60,000	~ 120,000	
	다목적	15,000	30,000	
	소체육관(中)	~ 40,000	~ 60,000	
	다목적	10,000	2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, 2레인
	소체육관(小)	~ 30,000	~ 40,000	
	블링장	(체육경기 시) 평일 : 50,000 ~ 70,000 토요일·공휴일 : 60,000 ~ 80,000		
망원동 테니스장		10,000 ~ 30,000	-	※ 사용료 기준 : 1일, 1면당
망원유수지 풋살장		30,000 ~ 80,000	-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, 1면당

1.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, 예술, 교육,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.
2.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%를,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%를 가산하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3. 음향,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.
4. 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9조(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사용 개시일 전 :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 략)</p> <p>[별표 3] 전용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	<p>제9조(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 전액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전용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 (단위 : 원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명칭</th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사용료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체육경기</th> <th>일반행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염리생활체육관</td> <td>종합체육관</td> <td>55,000 ~ 100,000</td> <td>80,000 ~ 160,000</td> <td rowspan="4"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체육실</td> <td>15,000 ~ 40,000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마포구민체육센터</td> <td>종합체육관</td> <td>100,000 ~ 200,000</td> <td>200,000 ~ 400,000</td> <td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大)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td>60,000 ~ 120,000</td> <td rowspan="3"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中)</td> <td>15,000 ~ 40,000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小)</td> <td>10,000 ~ 30,000</td> <td>20,000 ~ 40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볼링장</td> <td colspan="2">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</td> <td>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 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구분	사용료		비고	체육경기	일반행사	염리생활체육관	종합체육관	55,000 ~ 100,000	80,000 ~ 16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다목적체육실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마포구민체육센터	종합체육관	100,000 ~ 200,000	200,000 ~ 40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	다목적소체육관(大)	30,000 ~ 60,000	60,000 ~ 12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다목적소체육관(中)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다목적소체육관(小)	10,000 ~ 30,000	20,000 ~ 40,000		볼링장	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		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	(생 략)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명칭</th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사용료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체육경기</th> <th>일반행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염리생활체육관</td> <td>종합체육관</td> <td>55,000 ~ 100,000</td> <td>80,000 ~ 160,000</td> <td rowspan="4"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체육실</td> <td>15,000 ~ 40,000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마포구민체육센터</td> <td>종합체육관</td> <td>100,000 ~ 200,000</td> <td>200,000 ~ 400,000</td> <td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大)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td>60,000 ~ 120,000</td> <td rowspan="3">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中)</td> <td>15,000 ~ 40,000</td> <td>30,000 ~ 60,000</td> </tr> <tr> <td>다목적소체육관(小)</td> <td>10,000 ~ 30,000</td> <td>20,000 ~ 40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볼링장</td> <td colspan="2">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</td> <td>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구분	사용료		비고	체육경기	일반행사	염리생활체육관	종합체육관	55,000 ~ 100,000	80,000 ~ 16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다목적체육실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마포구민체육센터	종합체육관	100,000 ~ 200,000	200,000 ~ 40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	다목적소체육관(大)	30,000 ~ 60,000	60,000 ~ 12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다목적소체육관(中)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다목적소체육관(小)	10,000 ~ 30,000	20,000 ~ 40,000		볼링장	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		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	(현행과 같음)				
명칭			구분	사용료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체육경기	일반행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염리생활체육관	종합체육관	55,000 ~ 100,000	80,000 ~ 16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체육실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포구민체육센터	종합체육관	100,000 ~ 200,000	200,000 ~ 400,000	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大)	30,000 ~ 60,000	60,000 ~ 120,000	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中)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小)	10,000 ~ 30,000	20,000 ~ 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볼링장	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		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 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칭	구분	사용료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체육경기	일반행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염리생활체육관	종합체육관	55,000 ~ 100,000	80,000 ~ 160,000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체육실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포구민체육센터	종합체육관	100,000 ~ 200,000	200,000 ~ 400,000	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 동구코트 1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大)	30,000 ~ 60,000	60,000 ~ 120,000		※ 사용료 기준 : 2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中)	15,000 ~ 40,000	30,000 ~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목적소체육관(小)	10,000 ~ 30,000	20,000 ~ 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볼링장	(체육경기 시) 평일 : 18,000 ~ 50,000 토요일·공휴일 : 21,000 ~ 65,000		※ 사용료 기준 : 1시간, 1레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*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.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생활체육과 정고운
연 락 처	02-3153-9854